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5. 2.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목 차

1. 과 업 의 목 적
2. 과 업 의 개 요
3.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4. 과 업 시 행
5. 설 계 변 경 조 건
6. 보 안 대 책
7. 안 전 관 리
8. 기 타 사 항
9. 성 과 품 의 작 성 및 납 품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상태 및 구조적 안전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에 따른 성능평가(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의 시행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54개소(교량 46개소, 터널 8개소)

구조물명	이정 (Km)	연장 (m)	형식	종별	안전 등급	점검 기한	비고
고래진1교(부산)	1.8	430	STB	2종	B	12.22	
고래진1교(울산)	1.8	430	STB	1종	B	12.26	
고래진2교(부산)	2.3	150.2	PSCI	2종	B	12.22	
고래진2교(울산)	2.31	150.2	PSCI	2종	B	12.22	
남창천교(부산)	30.77	211	PSCI	2종	B	12.22	
남창천교(울산)	30.77	211	PSCI	2종	B	12.22	
내리천교(부산)	5.51	315	PSCI	2종	B	12.22	
내리천교(울산)	5.51	315	PSCI	2종	B	12.22	
당사천교(부산)	3.82	120	PSCI	2종	B	12.22	
당사천교(울산0)	3.82	119.85	PSCI	2종	B	12.22	
당사천교(울산1)	3.82	119.9	PSCI	2종	B	04.01	
대라교(부산)	8.31	350	PSCI	2종	B	12.22	
대라교(울산)	8.31	315	PSCI	2종	B	12.22	
대운천교(부산)	27.67	315	PSCI	2종	B	12.22	
대운천교(울산)	27.67	315	PSCI	2종	B	12.22	
동부산IC1교	3.82	105	STB	1종	B	04.01	
두현교(부산)	43.49	280	PSCI	2종	B	12.22	
두현교(울산)	43.49	280	PSCI	2종	B	12.22	

구조물명	이정 (Km)	연장 (m)	형식	종별	안전 등급	점검 기한	비고
만화교(부산)	10.22	309.94	STB	1종	B	12.26	
만화교(울산)	10.22	309.94	STB	1종	B	12.26	
문수IC1교	42.75	105.15	STB	2종	B	12.22	
문수IC2교	42.75	100.15	STB	1종	B	12.26	
삼정천교(부산)	38.71	315	PSCI	2종	B	12.22	
삼정천교(울산)	38.71	315	PSCI	2종	B	12.22	
영해1교(부산)	43.83	190	STB	1종	B	12.26	
영해1교(울산)	43.83	190	STB	1종	B	12.26	
용소교(부산)	9.42	421.04	PSCI	2종	B	12.22	
용소교(울산)	9.42	350.77	PSCI	2종	B	12.22	
용소천교(부산)	21.00	301.51	PSCI	2종	B	12.22	
용소천교(울산)	21.00	301.51	PSCI	2종	B	12.22	
울산JCT2교(부산)	47.03	200	STB	1종	B	12.26	
울산JCT2교(울산)	47.03	200	STB	1종	B	12.26	
울산JCT3교	47.03	220	STB	1종	B	12.26	
울산JCT4교	47.03	423	STB	1종	B	12.26	
원리2교(부산)	17.09	280	PSCI	2종	B	12.22	
원리2교(울산)	17.11	280	PSCI	2종	B	12.22	
일광IC1교	13.96	180	STB	1종	B	12.26	
일광IC교(부산)	13.83	315.02	PSCI	2종	B	12.22	
일광IC교(울산)	13.83	315.01	PSCI	2종	B	12.22	
장안천교(부산)	22.04	361.62	PSCI	2종	B	12.22	
장안천교(울산)	22.04	361.62	PSCI	2종	B	12.22	
좌광천교(부산)	17.87	270	PSCI	2종	B	12.22	
좌광천교(울산)	17.87	270	PSCI	2종	B	12.22	
좌천교(부산)	18.61	50	STB	2종	B	12.22	
회야대교(부산)	35.63	1,020	PSCB	1종	B	12.26	
회야대교(울산)	35.63	1,030	PSCB	1종	B	12.26	
기장1터널(부산)	8.76	536	NATM	1종	B	08.23	
기장1터널(울산)	8.79	466	NATM	1종	B	08.23	
기장2터널(부산)	9.86	265	NATM	1종	B	08.23	
기장2터널(울산)	9.83	304	NATM	1종	B	08.23	
문수터널(부산)	44.45	1,508	NATM	1종	B	08.23	
문수터널(울산)	44.47	1,599	NATM	1종	B	08.23	
해운대터널(부산)	0.9	680	NATM	2종	B	08.23	
해운대터널(울산)	0.9	680	NATM	2종	A	08.23	

나. 과업의 범위

1) 정밀안전점검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② 현장조사 및 시험
- ③ 상태평가
- ④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⑤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⑥ 종합결론(보고서 작성)

2) 성능평가

-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② 현장조사 및 시험
- ③ 안정성능 평가
- ④ 내구성능 평가
- ⑤ 사용성능 평가
- ⑥ 종합평가
- ⑦ 유지관리전략 제안
- ⑧ 종합결론(보고서 작성)

다. 과업기간 : 2025.12.19까지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본 과업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칭한다)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규정 및 지침, 계약조건,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품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자격 등

- 1) 과업의 수행을 위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①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하며,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②항에 의한 기술자격자로 한다.
- 2) 향후 본과업에 성능평가용역이 추가될 경우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자로 교체요청 할 수 있다.
- 3) 당사는 투입된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4)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우리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 5) 그 외에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과 우리지사의 '참여기술자 관리기준'을 따른다.

다. 과업수행 일반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착수계
 -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③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 ④ 예정공정표
 - ⑤ 인원투입계획서
 - ⑥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2)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 및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결과(이하 '사전검토 보고서'라 칭한다)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방침을 받아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한다.

- ① 과업수행 방법(장비사용 및 조사·시험 계획 포함)
- ② 과업수행 일정
- ③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④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 ⑤ 점검장비(굴절차, 고소차 등) 투입 및 교통안전관리 세부계획
- ⑥ 사용할 조사기기·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성적서 등 포함)
- ⑦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 ⑧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사항

3) ‘과업수행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일부터 업무일지(별첨 #1)를
작성·서명하여 당일 17시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월 마
지막주 금요일 전까지 업무보고서(별첨 #2)를 작성·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감독원이 필요에 의해서 과업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물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한다. 또한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외 시험 및 측정을 실시할 대상은 사전에 감독원과 위치·수량을 협
의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서면보고 또는 감독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는 우리지사와 상호 협의
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재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 6)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7) 과업대상 시설물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역 준공전 평가를 받아야한다.
- 8)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문서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의 일부로 인용 또는 활용된 경우에도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9)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를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구조물 유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는 도래일(준공일이 빠른 경우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각각 입력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 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디지털 데이터로 입력하여야 한다..
- 10) 우리지사는 당해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자'의 기술자 중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우리지사에서 요청하는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검토 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다.
- 11) 지진 등 재난 발생 및 긴급 안전점검 필요시 우리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중급이상) 인력을 투입하여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구조물의 긴급점검을 시행한다. 단, 민간전문가 투입일자 및 투입인원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추후 정산하여 설계변경 한다.(증빙 자료 필요)

라. 하도급 제한

-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 취소 등 우리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2) 다만 『시설물안전법』 제27조①항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해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한 차례만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우리지사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4. 과업시행

가. 일반사항

-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 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단계별 과업의 수행

1) 정밀안전점검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①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 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②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 ④ 손상 및 결함의 규격을 사전 및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입하며, 현장시험 시행 위치도는 부재별 시행위치를 알 수 있게 상세히 표기한다.
- ⑤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⑥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 ⑦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⑧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 ⑨ 교량하부 및 주변을 조사하여 구조물 위험요소 및 불법점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도 수록한다.
- ⑩ 하천교량의 경우 교각기초 세굴 등 육안조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상태평가

- 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외관조사 결과와 시험·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손상의 진전여부를 확인 한다.
- ②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① 평가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 ②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①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및 보수대책은 고속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보수·보강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 ③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 ④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향후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중점유지관리 사항 등 맞춤형 점검메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

- ① 보고서는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한다.)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 ④ 점검결과 전산입력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 한국도로공사 『도로통합플랫폼』

2) 성능평가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①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 준공이후 변경된 시방 및 제반 설계 기준등 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② 당해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물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① 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② 조사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 ④ 손상 및 결함의 규격을 사전 및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입하며, 현장시험 시행 위치도는 부재별 시행위치를 알 수 있게 상세히 표기한다.
- ⑤ 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관 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⑥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축·변형·변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재는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 ⑦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 ⑧ 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 ⑨ 교량하부 및 주변을 조사하여 구조물 위험요소 및 불법점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도 수록한다.
- ⑩ 하천교량의 경우 교각기초 세굴 등 육안조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능 평가

- ①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

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인'이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③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기존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등과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하고,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내구성능 평가

- ①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 ②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 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내구성능 등급은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마) 사용성능 평가

- ①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 ② ‘책임기술인’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바) 종합평가(종합성능등급 지정)

- ① ‘책임기술인’은 성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③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전략 제언

- ①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③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④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및 각종 기준 등을 참조한다.

- 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⑥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⑦ 보수보강 공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⑧ 보수, 보강 우선순위 결정은 보수보다는 보강,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으로 하며 시설물 전체의 우선순위는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⑨ 유지관리 방안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 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⑩ 유지관리 전략은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 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아) 보고서 작성

- ①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② 보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 및 도표 등이 있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 ③ 보고서의 ‘참여기술인 명단’ 참여기간은 업무일지의 실 참여일수를 기재한다.

④ 점검결과 전산입력

- 국토안전관리원 『FMS 시스템, SOC성능평가시스템』
- 한국도로공사 『도로통합플랫폼』

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업무내용 적용기준

-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 3)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 4) 도로교 설계기준
-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6)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7) 한국산업규격(KS)
-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5.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2) 우리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 4)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내용, 대상 구조물 및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수량변경 또는 증감, 안전보건관리 비용 반영시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용역 점검차량(굴절차, 고소차) 및 교통안전관리 등 선택 과업비용은 설계 수량과 비교하여 실제 투입수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수량에 맞게 정산 설계변경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1항에 의한 경우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별첨 #3)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첨 #4)를 과업착수시 제출하고 우리지사가 정하는 보안규정(보안업무처리예규 제54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참여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고속도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원 또는 대상시설물의 관리지사,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현장조사 중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점검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이후 즉시 안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현장조사 작업 전 반드시 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진단(점검)과정에 대해 점검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차는 외부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점검을 마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점검차 조작 시 2인 1조 체제를 구축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이때, 교량점검원은 점검업무 이외의 교량점검 접근장비에 대한 조작을 절대 금지한다.
- 마.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1인)은 위험성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사업책임기술인’은 우리공사에서 수립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 안전관리체계 (구조물처-1271호, 2020.5.11.)」 및 「도급사업 해석결과를 반영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협력형 안전관리체계(구조물처-1680호, 2020.6.15.)」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사. 교통안전관리가 동반되는 작업의 경우 시설물별 도로조건에 따른 세부적인 교통차단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차단 유형에 따른 차로별 안전시설, 신호수, 장비 및 작업장규모 등 세부 배치 및 운영 관련 차단도를 사전에 제출한다.
 - ※ 주요 고려대상 : 분리차로, 터널, 휴게소, 졸음쉼터, IC 및 JCT 등 여건, 곡선반경,종단구배 등
- 아. 교량점검시설에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 자. 사업책임기술인 등 5인은 안전상태를 확인 후 현장 작업 투입을 하며 상시 현장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 시 전적으로 ‘사업책임기술인’의 책임으로 한다.

8. 기타사항

가. 보고서는 양방향 통합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차량은 우리 공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 대한 무료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발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목적 및 과업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

- 1)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별첨참조).

바.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

- 1) 본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평가·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본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우리 공사에서 제공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을 작성·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 점검 및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한다.

9.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성과품의 작성

-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 2) 감독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 3)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나. 성과품의 납품목록

1) 정밀안전점검

- ① 최종보고서(양방향 495Page내외, 일방향 330Page내외, 10절, 백상지) 5 SET
- ② 요약보고서(10절, 백상지) 5 SET
- ③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수록 CD 5 SET

2) 성능평가

- ① 최종보고서(양방향 660Page내외, 일방향 400Page내외, 10절, 백상지) 10 SET
- ② 요약보고서(10절, 백상지) 10 SET
- ③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수록 CD 10 SET

업 무 일 지

작성일자 : 2025 . . .
작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 용역명 :
- 공 정 : 계 획 _____%, 실 시 _____%, 대 비 _____%

1. 과업수행내용

금 일 실 적	익 일 계 획

2. 인력투입현황

구분	투입인력			비 고
	내업	외업	현장인부	
투입인원 (당일투입/누계)				
투입인원 명단				

3. 특기사항

※ 장비투입 사항 등 기재

4. 인력투입 세부현황

투입인력 현황				투입일 현황							서명
소속	구분	성명	작업내용 (위치)	금일		익일		계(일)			
				내업	외업	내업	외업	계	내업	외업	
A사	사책			○		○		10	5	5	
B사	분책				○		○	6	4	2	
C사	분책				○	○		7	2	5	
	분참										
	분참										
	기타 참여	김도공 (제외10.10)									
	기타 참여										
	기타 참여	홍길동 (추가10.10)									

* 투입인력 현황 : 착수계 제출 시 등록된 전체 인원을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 변경 등으로 삭제된 경우 해당 성명 하단에 (제외, 제외일자) 표기 하고 추가 투입된 경우 전체 현황 및 성명하단에 (추가, 추가일자)를 표기함

** 투입일 현황 : (금일) 업무일지 작성일 기준 기술자의 내·외업 투입여부(○표기)
(익일) 업무일지 작성일 기준 익일 기술자의 내·외업 투입여부(○표기)
(계) 업무일지 작성일을 포함한 기술자의 내·외업 투입 누계(단위:일)

*** 서명란에 참여기술자 서명이 없는 경우 투입인원에서 제외한다.

5. 점검차량 투입 및 교통차단 세부현황

점검차량 투입 및 교통차단 세부현황						
구 분		전일 누계	금일 투입		금일 세부 투입현황	
			금일	누계	점검구조물	작업 내용
굴 절 차	1,2차로	4 대	1 대	5 대	00교(00)	A1~A2 바닥판 (00m) [장비명, ex) MBI-130]
	3차로	1 대	1 대	2 대	00교(00)	
	4차로	2 대	1 대	3 대	00교(00)	
	방음벽					
고소차		5 대	2 대	7 대	00교(00)	A1~A2 바닥판 (00m)
교통차단		4 일	1 일	5 일	00교(00)	00선 00.0K~00.0K (00시 ~ 00시 까지)

- * 장비투입 현황 : (금일) 업무일지 작성일 기준 점검차량 투입 대수 표기
(누계) 업무일지 작성일을 포함한 점검차량 투입 대수 누계
- ** 교통차단 현황 : (금일) 업무일지 작성일 기준 교통차단 실시여부 표기
(누계) 업무일지 작성일을 포함한 교통차단 일 누계(단위 : 일)
- *** 상기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과업지시서 5. 다항의 설계변경 시행

()월 업무 보고서

【 0100 : 】

작성일자 : 2025.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1. 공정현황

계 획(%)	실 시(%)	대 비(%)	용역기간	비 고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공 종	주요 작업내용	인원	장비	비고
실 적 (○월)	계				
	현장조사				
	내구성 조사				
	· · ·				
계 획 (○월)	계				
	현장조사				
	내구성조사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비 고
실 적 (○월)	고속도로 순찰대 (○ 지구대)		
	○○지사 등		
계 획 (○월)	고속도로 순찰대 (○ 지구대)		
	○○지사 등		

4. 인력 및 장비·교통차단 투입 실적 및 계획

구 분		실적			계획
		계	전월까지	금월	
인력	계				
	내업				
	외업				
굴절차	계				
	1~2차로				
	3차로				
	4차로 이상				
	방음벽				
고소차					
교통차단					

5. 현 안 사 항

○

6. 건 의 사 항

○

별 첨 #4

(업체대표자용)

보안각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별 첨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항목	공사		용역		구매설치	
			#1	#2	#3	#4	#5	#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A. 안전보건 관리체계		소계	35	25	35	25	25	0
1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10	10	10	10	-
2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5	10	5	5	-
		안전 예산 현황	10	5	10	5	5	-
3	종사자 의견	종사자 의견 청취	5	5	5	5	5	-
B. 안전보건 운영관리		소계	45	55	45	55	55	80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0	10	10	10	10	20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10	10	10	10	10	20
		근로자 참석	5	5	5	5	5	10
5	안전점검 계획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5	10	5	10	-	-
6	교육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5	10	5	10	10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5	5	5	10	10
8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5	5	10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20	20	20	20	20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20	20	20	20	20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1,#3)*]

* 공사 2억 이상, 용역 2억1천 이상 시

결 재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 00.00.00 ~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 배점	심사 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안전 예산 현황			10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10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 근로자 참석 여부			5		
5. 안전점검 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6.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여부			5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8.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25점)

- 안전 전문인력(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성평가(25점)

4-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10	6	3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음
-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5) 위험성평가 기록

4-2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적정여부	10	6	3

- ① 우수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적절하게 작성됨
- ② 보통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결여됨

4-3 근로자 참석(5점)

구분	우수	미흡
해당 사업 근로자 참석여부	5	2

- ① 우수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참여함
- ② 미흡 : 위험성 평가 실시시 근로자 미참여함

5. 안전점검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5	3	2

-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7.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미작성되어 있음

8.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9.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